

4.3.11 전과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03. 07. 09.
개정	2006. 10. 19.
개정	2009. 02. 24.
개정	2013. 02. 26.
개정	2014. 02. 28.
개정	2014. 11. 03.
개정	2016. 02. 18.
개정	2016. 11. 15.
개정	2017. 02. 22.
개정	2017. 06. 19.
개정	2018. 09. 05.
개정	2019. 06. 04.
개정	2020. 11. 26.
개정	2021. 06. 02.
개정	2021. 12. 29.
개정	2022. 04. 04.
개정	2024. 04. 01.
개정	2024. 07.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학칙 제22조에 의하여 전과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8.〉

제2조(신청자격) ① 전과 신청 자격은 신.편입생 입학 당해 학기 이수자로 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과 모집중지된 학과 소속의 학생은 기준에 제한 없이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02.22., 2018.09.05., 2021.12.29., 2022.04.04., 2024.07.23〉

제3조(시기) 전과는 학기 개시 이전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 학기 경과 후 신청가능하다. 〈개정 2017.02.22., 2018.09.05., 2022.04.04., 2024.04.01.〉

제4조(전과허용범위) ① 전과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모든 학과에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글로벌혁신대학 전과 관련은 글로벌혁신대학학사운영규정을 따르고,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등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학과의 경우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모집중지된 학과학생은 전과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02.28., 2017.02.22., 2017.06.19., 2021.12.29., 2024.04.01.〉

② 전과 허용인원은 학과의 운영, 유지 실정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02.06, 2013.02.26, 2016.02.18., 2017.02.22., 2017.06.19., 2021.12.29.〉

③ 학사내규 제53조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할 수 없다.〈개정 2014.02.28., 2021.06.02.〉

④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전반적인 학습능력 부족,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년 수료기준과 상관없이 소속 학과장 및 전과 신청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15.〉 〈개정 2020.11.26.〉

⑤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의 전과 허용은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운영, 유지 실정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신설 2018.09.05.>

⑥ 위 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중지학과로 전과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전과신청자 이수학년 및 학점
2. 모집중지학과 교육과정 개설 예정 현황(교육과정 존치 가능기간)
3. 재학 및 수학연한, 휴학 사유 발생 시 복학 후 교육과정 이수 가능 여부
4. 기타 졸업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능 여부 등

<본 항 신설 2021.12.29.>

제5조(신청 및 허가) ① 전과 지원자는 전과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 신청 학부(과)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1. 성적 증명서 1부
2. 삭제 <2017.02.22>
3. 학부(과)장 추천서 및 전과신청자 학점 인정서 각 1부<신설 2014.11.03.>

② 전과대상자의 선발은 성적순(전체 평균평점)으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전과신청을 받은 학부(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한다.

<신설 2016.02.18.>

④ 단, 모집중지학과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전과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공이수학점, 학습권보장 등을 검토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과학과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6조(전과 후 이수 학점) 전입학 학부(과)는 다음과 같이 교과이수 내용을 검토하여 학점 인정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17.02.22>

1. 교양과목학점은 소정의 학점(영역별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전입학부(과)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만 인정
3. 전입학부(과)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개정 2017.02.22>
4. 전입후의 교과목의 이수는 전입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5. 삭제 <2019.06.04>
6. 삭제 <개정 2017.02.22.,> <2021.06.0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03.20., 2019.06.04., 2019.07.18., 2020.05.28.>

전과자 학점인정서

1. 학적사항

학번	성명	학년	전출학과	전입학과	비고

2. 학점인정

구분	전공학점	교양학점	일반선택학점	총계	비고
취득학점					
인정학점					

3. 전공 및 교양영역 최소 이수학점(전입학과)

전공	교양필수	균형교양	학문기초	비고

※ 최소 이수학점 배정은 전과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준함

본 학과에서는 위와 같이 전과 신청자의 취득학점을 인정하며 신교육과정 및 학년별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강신청, 졸업요건 등에 대해 학사지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학과장

(인)